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292
----------	-------

발의연월일 : 2026. 4. 13.

발 의 자 : 이훈기 · 박지원 · 최민희
권향엽 · 정진욱 · 민홍철
김태선 · 황운하 · 서영교
민병덕 의원(10인)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이후 장기간에 걸친 권위주의 정권과 군사독재 시절을 거치며, 국가권력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폭력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였음. 국가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역사적 과제임.

1995년 제정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은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 및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만 공소시효의 적용배제를 명문화하였음. 또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도 극히 제한적인 사례에서만 공소시효 진행정지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이에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 당사자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

을 배제하며,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가권력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에 의해 형사상·민사상 특례의 적용을 받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 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함(안 제3조).
- 다.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유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함(안 제4조).
- 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대해서는 이 법을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함(안 제5조).
- 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규정에 부진정소급효를 부여함(부칙 제2조).
- 바.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는 진정소급효를 부여하고, 피해자의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부진정소급효를 부여함(부칙 제3조).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가권력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인권적 국가범죄”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공무원(「행정기본법」 제2조제2호나목의 공무원수탁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나. 군의 지휘관·지휘자가 범한 「군형법」 제62조의 죄(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 수사 또는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조작·은폐하기 위하여 범한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 제151조, 제152조, 제155조 및 「국가보안법」 제12조의 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2. “유족”이란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①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범자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제4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피해자 본인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유족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조, 「국가재정법」 제96조에도 불구하고 유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나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1항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4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